

제214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
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9. 6. 19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專 門 委 員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

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114호로 2019년 6월 5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「장애인복지법」이 개정되어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」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제명을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”에서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”로 변경
- 나. “중증 장애인”을 “장애인”으로 용어 변경(안 제1조 외)
- 다. “중증 장애인”의 정의 조항 삭제(안 제2조제2호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원안동의

라. 입법예고(2019. 5. 2. ~ 5. 22. / 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건은 조례의 근거 법령인 「장애인복지법」 개정(2019. 7. 1. 시행)에 따라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조례 제명을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”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“로 변경하였고
- 안 제2조제2호의 “중증 장애인”의 정의 규정을 삭제하였으며,
- 그 밖에 “중증 장애인”을 “장애인”으로 용어 변경을 하였음.

○ 본 조례안은 개정된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조례 제명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입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참 고 자 료

1 장애인복지법 (2019. 7. 1. 시행)

제53조(자립생활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,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54조(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